

현금 IC 카드 이용약관 개정전후 대비표

1. 개정일 : 2012.08.17

2. 개정내용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 1 조 적용범위</p> <p>① 「하나 현금 IC 카드」(이하 “현금 IC 카드” 라 함)란 IC 칩이 내장된 플라스틱 카드로 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 이라 함)이 제공하는 카드를 말하며, 현금 IC 카드를 이용한 서비스는 본 약관을 우선 적용한다.</p> <p>②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, 예금거래 기본약관, 전자통장 특약, 입출금이 자유로운 약관 및 CD공동이용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</p> <p>제 2 조 용어의 정의</p> <p>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① IC 칩: 카드에 장착될 수 있는 집적회로(IC)를 말한다.</p> <p>② 카드출금 비밀번호: 현금IC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 등 자동화기기에 서 인출 등의 거래시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직접 지정하는 4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비밀번호를 말한다.</p> <p>③ PIN (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) : 현금IC카드 발급시 이용자가 직접 지정하는 6자리의 구성된 비밀번호를 말한다.</p> <p>제 3 조 이용계약의 성립</p> <p>이용자가 은행이 정한 “현금IC카드발급신청서” 를 작성 제출하고, 은행</p>	<p>제 1 조 적용범위</p> <p>① 「하나 현금 IC 카드」(이하 “현금 IC 카드” 라 함)란 IC 칩이 내장된 플라스틱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, 현금자동 입출금기, 무인공과금 수납기(이하 “자동화기기” 라 함)를 이용하여 예금거래를 하거나 현금카드 가맹점(이하 “가맹점” 이라 한다)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대금을 결제할 목적으로 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 이라 함)이 제공하는 카드를 말하며, 현금 IC 카드를 이용한 서비스는 본 약관을 우선 적용한다.</p> <p>② (좌 동)</p> <p>제 2 조 용어의 정의</p> <p>(좌 동)</p> <p>제 3 조 이용계약의 성립</p> <p>(좌 동)</p>	<p>-카드발급 목적추가</p>

이 이를 접수·승인함과 동시에 이용자에게 현금 IC카드를 교부함으로써 성립한다.

제 4 조 현금 IC카드의 계좌 등록

- ① 현금 IC카드에는 2계좌 이상 등록이 가능하며, 카드 1매당 최대 10계좌까지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② 이용자가 계좌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
제 5 조 카드출금 비밀번호 및 PIN 의 신고

현금 IC카드의 카드출금시 이용할, 카드출금 비밀번호와 PIN은 은행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

제 6 조 현금 IC카드에 의한 거래

- ① 현금 IC카드는 통장이나 청구서 또는 수표의 제출 없이 현금자동지급기 등 자동화기기에 의하여 현금인출(자금이체포함) 및 조회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다.
- ② 서비스 이용시 은행은 PIN번호, 계좌번호, 카드출금 비밀번호가 사전에 은행에 신고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서비스 이용자를 신청인 본인으로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. 단, 현금 IC카드에 계좌가 1개만 등록된 경우에는 PIN번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.
- ③ 자동화기기의 장애로 인하여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기타 혼잡 등 창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점 창구에 카드를 제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.

④ (신 설)

⑤ (신 설)

제 4 조 현금 IC카드의 계좌 등록

(좌 동)

제 5 조 카드출금 비밀번호 및 PIN 의 신고

(좌 동)

제 6 조 현금 IC카드에 의한 거래

① (좌 동)

② (좌 동)

③ (좌 동)

④ 예금주가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 가맹점에서 일시불에 한하여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.

⑤ 가맹점에서 카드이용 후 이용대금이 예금주의 결제계좌에서 자동 출금되어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 예금주가 반품, 취소 등의 이유로 가맹

-카드이용범위 추가

-카드이용범위 추가

<p>⑥ (신 설)</p> <p>제 7 조 현금자동지급기 거래명세 확인</p> <p>① 현금IC카드의 이용시 현금자동지급기 등 자동화기에서 제공되는 거래 명세에 의하여 이용 금액 등 거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.</p> <p>② (신 설)</p> <p>제 8 조 변경, 사고 등의 신고</p> <p>① 이용자는 현금IC카드에 계좌를 추가,삭제,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현금IC카드의 분실,훼손,도난,PIN번호 누설 등 사고발생시에는 은행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 9 조 현금IC카드의 재발급</p> <p>은행은 이용자로부터 현금IC카드의 분실,도난,멸실,훼손에 따른 재발급 요청을 접수한 경우 신고한 비밀번호를 대조하고,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 증표로 주의깊게 본인을 확인한 후 재발급 한다.</p> <p>제 10 조 현금IC카드 출금비밀번호 오류 및 사용중지</p>	<p>점과 합의하여 해당거래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이 정한 바에 따라 가맹점의 카드단말기를 통해 취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은행은 예금주의 결제계좌로부터 출금하였던 금액을 같은 결제계좌로 입금한다.</p> <p>⑥ 가맹점에서 거래취소시 부득이한 여건에 의하여 단말기에 의한 취소가 불가능할 경우 예금주는 가맹점으로부터 해당 대금을 직접 환불받는 방법 등으로 해결하기로 하며 은행은 동 처리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.</p> <p>제 7 조 현금자동지급기 거래명세 확인</p> <p>① (좌 동)</p> <p>② 예금주가 가맹점에서 결제거래시 은행은 이용명세를 예금주의 통장(결제계좌)에 기장해 줌으로서 이용명세 통지에 같음할 수 있다.</p> <p>제 8 조 변경, 사고 등의 신고</p> <p>(좌 동)</p> <p>제 9 조 현금IC카드의 재발급</p> <p>(좌 동)</p> <p>제 10 조 현금IC카드 출금비밀번호 오류 및 사용중지</p>	<p>-가맹점 결제취소 불가능시 처리원칙명시</p> <p>-거래명세 표시항목 추가</p>
---	---	---

<p>① 이용자가 일자에 관계없이 현금IC카드 출금비밀번호를 누적하여 3회 오류 입력시 또는 PIN을 누적하여 5회이상 오류 입력시에 은행은 현금IC카드를 이용한 거래를 제한 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가 제한된 경우 해제를 위해서는 이용자 본인이 영업점을 방문하여 카드출금비밀번호, PIN을 변경 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 설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 설)</p>	<p>① (좌 동)</p> <p>② (좌 동)</p> <p>③ 자동화기기의 고장, 정전, 온라인 장애 및 사고발생시 당행 및 참가은행은 일시적으로 카드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.</p> <p>④ 온라인 마감, 결산을 위한 일시 전산가동 중단시 및 예금잔액 확인을 즉시 할 수 없어 가맹점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.</p>	<p>-카드사용중지 항목 추가</p>
<p>제 11 조 이용한도 및 이용시간</p> <p>① 이용한도 및 이용시간은 현금카드 이용약관의 내용을 준수하며 은행의 홈페이지 및 영업점 자동화기기에 게시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 설)</p>	<p>제 11 조 이용한도 및 이용시간</p> <p>① (좌 동)</p> <p>② 카드를 이용한 자동화기기 및 가맹점 이용시간은 당행 및 참가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이용시간은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 자동화기기에 게시한다.</p>	<p>-이용시간 규정항목 신설</p>
<p>제 12 조 수수료</p> <p>① 현금IC카드의 신규발급 및 재발급시 이용자는 발급매수당 2,000원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자동화기기를 통한 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카드 이용약관의 내용을 준수하며 은행의 홈페이지 및 영업점자동화기기에 게시한다</p>	<p>제 12 조 수수료</p> <p>(좌 동)</p>	
<p>제 13조 손실부담 및 면책</p> <p>① 은행은 현금IC카드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</p>	<p>제 13조 손실부담 및 면책</p> <p>① (좌 동)</p>	

<p>경과이자를 보상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.</p> <p>가) 천재지변, 전쟁, 테러,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, 화재, 건물의 훼손 또는 테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</p> <p>나) 이용자가 현금 IC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경우</p> <p>다) 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현금 IC카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PIN번호나 출금비밀번호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</p> <p>③ 이용자로부터 현금 IC카드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은행은 그 때부터 제3자가 현금 IC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 설)</p>	<p>② (좌 동)</p> <p>③ (좌 동)</p> <p>④ 신고된 비밀번호와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현금이 지급되거나 결제승인이 된 경우 카드의 위조, 변조, 도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나 손해에 대하여 당행의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당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다만, 당행이 예금주의 카드가 위조, 변조, 또는 도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	
<p>제 14 조 현금 IC카드의 반환</p> <p>이용자는 예금의 해지시에는 현금 IC카드를 거래점에 반환하여야 한다</p>	<p>제 14 조 현금 IC카드의 반환</p> <p>(좌 동)</p>	-손실부담 및 면책사항 추가
<p>제 15 조 양도 또는 담보제공의 금지</p> <p>현금 IC카드는 양도나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.</p>	<p>제 15 조 양도 또는 담보제공의 금지</p> <p>(좌 동)</p>	
<p>제 16 조 카드의 이용제한</p>	<p>제 16 조 카드의 이용제한</p>	

1회 3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.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범위 내에서 1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(신 설)

(좌 동)

제 17 조 준용규정

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은행의 각 예금종류별 약관 및 약정, 참가은행간 CD 공동이용업무규약, 금융 IC 카드공동업무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-준용규정 추가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